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4. 5. .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191호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7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과 기술성·성장성이 유사한 기업
군임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과는 다르게 「상법」에 따른 소규모합
병 및 간이합병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바, 기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투자금의 주요 회수통로인 인수·합병
을 활성화하고, 기술 용·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에 적용하는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특례를 기술혁
신형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합병
의 범위를 합병 후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 총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서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고,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간이합병의 범위를 소멸회사의 총주주의 동의 또는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존속회사가 소유하는 경우에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 완화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특례 도입
(안 제15조의2 신설)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특례를 준용

3. 의견제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중소기업청(생산혁신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www.smba.go.kr)의 “행정정보-법률정보-공고”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전화 : 042-481-4437, Fax : 042-472-328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하고,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특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에 관하여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9 및 제15조의10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본다.

부 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5조의 2(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 특례)</u>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에 관하여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9 및 제15조의 10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본다.</p>
<u>제15조의 2 (생 략)</u>	<u>제15조의 3 (현행 제15조의 2와 같음)</u>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생산혁신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437